신고어업의 간접보상요건

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 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,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신고어업자가 입 은 간접손해에 대하여도 그러한 손실이 발행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,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, 이러한 경우 위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손실 보상청구권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승인 고시일 이전에 적법한 어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, 종전 부터 사실상 그 신고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. (대법원 2001.03.27. 선 고 2000다55720 판결)